투자 위험 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IBK자산운용㈜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IBK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www.ibkasset.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11월 10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총액]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
7.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홈페이지 → dis.kofia.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의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IBK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현재기준)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전환(합병, 모자형 전환 등)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이 집합투자기구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재산을 외화표시자산인 해외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외화표시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전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투자위험(원금손실위험)의 회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증권시장 여건에 따라 투자위험이 확대되거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장기투자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자산배분모델을 활용하여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및 대체투자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요약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별첨]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 어 풀 이

요약 정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6.10.20.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펀드코드 : DJ437]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IBK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및 대체투자자산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및 대체투자자산관련 집합투자기구의 가격하락위험, 자산배분위험, 재간접투자위험, 해외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벤치마크): 해당사항 없음

- 시장상황,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지정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지정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에 9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다양한 종류의 인컴·배당관련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및 대체투자자산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 운용에 관한 사항>

■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다양한 종류의 인컴·배당관련 국내·외 주식 및 국내·외 채권, 대체투자자산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다만,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ETF 포함),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ETF 포함), 대체투자(인프라, 부동산 등)관련 집합투자기구(ETF 포함)를 합산하여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투자합니다.

① 채권관련 인컴수익 추구전략

- 국내·외 국채, 투자적격등급(IG) 채권 및 투기등급(하이일드)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
- 신용시장 변화에 따른 하이일드 채권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수익률 개선 및 신용위험 관리

② 대체자산관련 인컴수익 추구전략

- 국내·외 국채, 투자적격등급(IG) 채권 및 투기등급(하이일드)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
- 국내·외 부동산(REITs), 인프라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

- 부동산, 인프라 중심의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과 장기 자본차익을 추구
-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관련 투자는 입지, 현금흐름, 순영업이익(NOI),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 정부보조지원책 등의 분석을 기반
 (국내오피스, 고속도로, 일본리츠, 일본태양광, 미국인프라 등으로 분산하며 신규 투자처 지속 발굴)
- 해외 리츠관련 선물을 활용하여 해외 리츠의 가격하락 위험을 적극적으로 방어(Hedge)하면서, 인컴수익의 선별적 확보 추구

③ 배당수익 추구전략

- 국내·외 배당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주,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에 투자
- 지속적인 배당수익뿐만 아니라 주가상승을 동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선별

※ 금융시장상황 및 운용전문인력의 투자판단 등에 따라, 배당수익 추구전략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예시)>

자산유형	종목명	유형	등록지	운용사	주요내용	투자비중(안)
채권인컴	Vanguard Short-Term TIPS ETF	ETF	미국	The Vanguard Group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국채 -설정일: 2012-10-16 -설정액: 약 136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3.0% 수준
	SPDR Bloomberg Bardays Short-Term HY ETF	ETF	미국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하이일드채 -설정일: 2012-03-15 -설정액: 약 45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17.0% 수준
	iShares 0-5 Year TIPS ETF	ETF	미국	BlackRock Fund Advisors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국채 -설정일: 2012-03-10 -설정액: 약 52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17.0% 수준
	PIMCO 1-5 Year U.S. TIPS ETF	ETF	미국	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 LLC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국채 -설정일: 2009-08-21 -설정액: 약 9.0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10.0% 수준
대체인컴	맥쿼리인프라	인프라	대한민국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요 투자대상자산:국내 사회기반시설사업 -설정일: 2006-03-15 -설정액: 약 4 조 4,594 억원 -표시통화: KRW -감독기관: 한국 금융감독원	8.00% 수준
	Prologis	리츠	미국	Prologis,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글로벌 산업용 부동산 -설정일: 1997-11-20 -설정액: 약 853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 수준
	Omega Healthcare	리츠	미국	Omega Healthcare Investors,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의료 시설 -설정일: 1992-03-31 -설정액: 약 84 억 USD	2.0% 수준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American Homes 4 Rent	리츠	미국	AMERICAN HOMES 4 RENT, LP.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주거용 부동산 -설정일: 2013-08-01 -설정액: 약 119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 수준
	American Tower	리츠	미국	American Tower Corp	-주요투자대상자산미국인프라스트럭처관련부동산 -설정일: 2010-06-28 -설정액: 약 1,117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1.60% 수준
	Equinix	리츠	미국	Equinix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글로벌 데이터센터관련 부동산 -설정일: 2000-08-11 -설정액: 약 643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0.8% 수준
	Simon Property	리츠	미국	Simon Property Group,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소매 부동산 -설정일: 1993-12-13 -설정액: 약 379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0.8% 수준
	Alexandria	리츠	미국	Alexandria Real Estate Equities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사무실용 부동산 -설정일: 1997-05-27 -설정액: 약 264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0.8% 수준
배당 인컴	배당주 등	주식	미국	-	-	5.0% 수준
유동성	-	-	-	-	-	10.0% 수준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1년 5월 19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 가능한 자산의 일부를 제시한 예시이며, 향후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대상자산 및 투자비중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에 관한 사항>

※ 투자대상 유니버스는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과 협업하여 선정

- 효율적인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선정을 위해 온라인특화 투자자문사인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유니버스 선정에 대한 자문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업자인 IBK 자산운용이 투자대상종목 및 투자비율 등을 최종 결정하여 운용합니다.

① 업무위탁의 범위와 사유

구분	내용
업무위탁의 범위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업무위탁의 사유	업무의 전문성 강화

② 투자자문업자의 회사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주식회사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
설립일	2016. 5. 16 법인 설립 / 2017. 9. 8 투자자문업 등록

주소 및 연락처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65, 4층

※ 상기 운용전략은 금융시장 상황 및 운용전문인력의 투자판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문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 중에 투자자문업자와의 자문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환헷지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에서 직접적인 헷지를 수행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헷지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투자신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표시자산(USD 등)에 투자하며 환율변동위험의 회피를 위하여 환헤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목표 환헷지 비율: 외화표시 자산 NAV의 80% 이상 수준)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환헷지 대상 자산 및 환헷지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환헷지 전략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화표시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완전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해외60재간접형)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이내	0.770	0.400	0.900	1.0934	214	332	454	714	1,4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070	0.700	1.190	1.3845	145	296	452	780	1,709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이내	0.570	0.200	0.580	0.8824	142	238	338	550	1,16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0.720	0.350	0.730	1.0331	108	221	338	587	1,297

(주1)'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율은 **연 0.19%** 수준으로 추정)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25.10.21 ~ 26.10.20	최근 2년 24.10.21 ~ 26.10.20	최근 3년 23.10.21 ~ 26.10.20	최근 5년 21.10.21 ~ 26.10.20	설정일이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	2021.07.01	6.00	4.29	8.34	1.91	1.80
비교지수(%)		-	-	-	-	-
수익률 변동성(%)		10.33	8.50	8.04	7.43	7.24

(주1)비교지수: 없음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이 투자신탁은 투자기간이 1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실적은 작성기준일 현재 기재 가능한 실적에 한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신준형	1975	책임(이사)	35개	10,045억원	8.05	9.35	6.44	9.30	19년

김정훈	1985	부책임(차장)	5개	323억원	7.14	-	6.44	9.30	16년 3개월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재산을 외화표시자산인 해외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외화표시자산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대상인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전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투자위험(원금손실위험)의 회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증권시장 여건에 따라 투자위험이 확대되거나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자의 장기투자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한 자산배분모델을 활용하여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및 대체투자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투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특정 자산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일반 투자신탁에 비해 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환매수수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주식, 다양한 대체투자자산 및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 등에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국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국가의 시장·정치·경제적 상황·정부정책·과세제도 등의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산별 편입비율을 장기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타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 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 계약해지 및 변경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직접운용 또는 다른 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가 없는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의 특성 상 비교지수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비교지수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위험이 감소되거나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교지수를 책정한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자산에 투자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불확실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외국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국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지연	국제 결제와 관련된 송금 지연 및 해외증권시장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 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에서 직접적인 헷지를 수행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헷지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헷지를 수행하나, 이러한 전략이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헷지에 대한 사항은 투자신탁 환위험관리 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처리(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의 결제과정 및 현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처리에 대한 위험(오퍼레이션 위험)이 존재합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8영업일(D+7)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table>
<tr><td>환매
수수료</td><td colspan="2">없음</td><td colspan="2">환매청구일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4">
<table>
<tr><td>산정방법</td><td>-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44자 (www.ibk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td></tr>
<tr><td>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td><td>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td></tr>
</table>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td></tr>
<tr><td>과세</td><td colspan="4">
<table>
<tr><th>구 분</th><th>과세의 주요내용</th></tr>
<tr><td>집합투자기구</td><td>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td></tr>
<tr><td>수익자</td><td>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으로 가입한 수익자는 별도의 과세체계에 따라 과세됩니다. (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참조)](투자설명서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참조)]</td></tr>
</table>
</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4">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4">IBK자산운용㈜ (대표번호: 02-727-88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ibkasset.com)</td></tr>
<tr><td>모집기간</td><td>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 colspan="2">별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함</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년 11월 10일</td><td>존속 기간</td><td colspan="2">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4">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4">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r><td rowspan="2">판매수수료</td><td>수수료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수수료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td></tr>
<tr><td rowspan="3">판매경로</td><td>온라인(e)</td><td>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오프라인</td><td>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td></tr>
<tr><td>온라인슈퍼(S)</td><td>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td></tr>
<tr><td>기타</td><td>개인연금</td><td>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td></tr>
</table>
</td></tr>
</table>

		(P)	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전문투자자(f)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호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외국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100억이상 투자하는 경우,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에서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고액투자자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bkasse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DJ437]						
(종류)클래스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	수수료선취 -온라인 (A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전문투자자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Cw)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S)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J438	DJ439	DJ440	DJ441	DJ442	DJ443	DJ444
(종류)클래스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S-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C-P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R)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S-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i)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J445	DJ446	DJ447	DJ448	DJ449	DJ450	DJ451
(종류)클래스	수수료미징구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O)	-	-	-	-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W727	-	-	-	-	-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집합투자기구(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모집(판매)금액에 제한이 없으며, 1좌(1좌당 1원, 원본액 기준)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투자신탁해지일까지 모집(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항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DJ437]						
(종류)클래스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A)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C)	수수료선취 -온라인 (A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C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전문투자자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Cw)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 (S)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J438	DJ439	DJ440	DJ441	DJ442	DJ443	DJ444
(종류)클래스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S-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C-P)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C-Pe)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R)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 (C-R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퇴직연금 (S-R)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C-i)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J445	DJ446	DJ447	DJ448	DJ449	DJ450	DJ451
(종류)클래스	수수료미징구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O)	-	-	-	-	-	-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DW727	-	-	-	-	-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자	내용
2021. 7. 1.	최초설정(예정)
2022. 1. 7	①운용전문인력 변경(부책임인력 : 황재희, 허성현 -> 황재희) ②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보사항 갱신 -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하는 펀드 규모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 규모 ③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2. 8. 9	①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른 디폴트옵션 클래스 추가 및 퇴직연금 클래스 가입자격 정정
2022.12.21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②집합투자재산 평가방법 개정사항 반영 ③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3.12.06	①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24.03.27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②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③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④채권평가회사 추가 ⑤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4.12.27	①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개정사항(2024.08.01) 반영 (S클래스 정의 변경) ②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 ③부책임운용역 추가(김정훈)

	④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2024.01.25) 반영 ⑤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6.03.11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업데이트 (12.11% → 12.62%) ②외국원천징수세액 환급 내용 삭제에 따른 기재정정
2026.11.10	①결산에 따른 최근현황 업데이트 -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업데이트 (12.62% → 15.42%)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신탁계약서에서 정해진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IBK 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11 층) (연락처 : 02-727-8800, www.ibkasset.com)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이력
신준형	1975	책임운용역(이사)	19년	- IBK자산운용 (2008. 11 ~ 현재) - KB생명 (2008. 4 ~ 2008. 10) - 새마을금고연합회 (2007. 4 ~ 2008. 3) - 삼성카드 (2000. 7 ~ 2004. 2)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1개, 378억원	
김정훈	1985	부책임운용역(차장)	16년 3개월	- IBK자산운용 (20023 11 ~ 현재) - 한국투자신탁운용 (2022. 11 ~ 2023 11) - KB자산운용 (2017. 9 ~ 2022. 11) - BNK자산운용(2010. 8 ~ 2017. 9)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성명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해외60재간접형)(%)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신준형	책임운용역(이사)	35개	10,045억원	8.05	9.35	6.44	9.30
김정훈	부책임운용역(차장)	5개	323억원	7.14	-	6.44	9.30

(주1)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dis.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다.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부책임운용역	운용 기간
황재희 허성현	2021.07.01 ~ 2022.01.07
황재희	2021.07.01 ~ 2023.12.05
김정훈	2024.12.27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전문투자자(f)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호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외국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100억이상 투자하는 경우,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에서 가입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을 통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i)	최소 가입금액이 정해져 있는 고액투자자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퇴직연금(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상기의 3 단계 분류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은 특성의 수익증권 종류로 구분됩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전문투자자(Cf)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 9 호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외국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100 억이상 투자하는 경우,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에서 가입 가능한 경우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자금 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디폴트옵션-퇴직연금(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수익증권

다.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 / 자투자신탁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모투자신탁 명칭		주요 내용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주요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40% 초과
	투자목적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비교지수	없음
	투자전략	• 신탁재산을 주로 다양한 종류의 인컴·배당관련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및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 •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 구축 등의 업무에 대하여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유니버스 선정에 대한 자문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업자인 IBK자산운용이 투자대상 종목 및 투자비율 등을 최종 결정하여 운용합니다.
	주요 투자위험	재간접투자위험, 자산배분위험, ETF투자위험, 투자자문업자계약 해지 및 변경위험, 환율변동위험 등
	등록신청서 제출일	2021.06.07.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90% 이상**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모투자신탁 [혼합-재간접형]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3. 기타 유동성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이하** 다만,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 및 모투자신탁의 처분 등으로 인하여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①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②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③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상기 ①~③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1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에 대해서는 "제2부 [별첨]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에 대해서는 "제2부 [별첨]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에 9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에 대해서는 "제2부 [별첨]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문업자에 관한 사항>

※ 투자대상 유니버스는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과 협업하여 선정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효율적인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선정을 위해 온라인특화 투자자문사인 ㈜플레인바닐라 투자자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유니버스 선정에 대한 자문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업자인 IBK 자산운용이 투자대상종목 및 투자비율 등을 최종 결정하여 운용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투자자문계약을 해지하거나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절차 및 투자자에 대한 공시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의 변경절차를 따를 계획입니다.

① 업무위탁의 범위와 사유

구분	내용
업무위탁의 범위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업무위탁의 사유	업무의 전문성 강화

② 투자자문업자의 회사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주식회사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
설립일	2016. 5. 16 법인 설립 / 2017. 9. 8 투자자문업 등록
주소 및 연락처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65, 4층

※ 상기 운용전략은 금융시장 상황 및 운용전문인력의 투자판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문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 중에 투자자문업자 와의 자문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 단위의 위험관리는 수행하지 않으며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리츠관련 선물을 활용하여 해외 리츠의 가격 변동성 위험 방어전략을 수행합니다.
-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에 따른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결정합니다.
- 보유 집합투자기구(ETF 등),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ETF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선제적 위험관리를 수행합니다.
- 모투자신탁을 통하여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경우 정기 운용보고서 입수 및 수시공시 사항 등을 점검하여 위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 운용목적, 기본정보, 운용성과, 투자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하는 월간운용보고서 등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환헤지 전략 및 환위험관리>

1) 환헤지 여부 및 목표 헤지 비율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에서 직접적인 헷지를 수행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헷지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투자신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표시자산(USD 등)에 투자하며 환율변동위험의 회피를 위하여 환헤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목표 환헷지 비율: 외화표시 자산 NAV의 80% 이상 수준)**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환헷지 대상 자산 및 환헷지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환헷지 전략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화표시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완전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3) 환헷지의 비용 등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의 환헤지 비용

목표 헤지비율	기준일(2026.06.30) 현재 환헤지 비율(%)	(2025.07.01 ~ 2026.06.30) 환헤지 비용 (원)
외화표시자산(USD 등)을 기준으로 80% 이상 수준	88.032082	430,440

※환헤지 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환헤지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과 해지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환해지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규로 설정되는 투자신탁으로서 실제 환헤지 비율과 비용은 투자신탁 회계기간 경과 후 기재할 예정입니다. [직전회계연도: 2025.07.01 ~ 2026.06.30]

4) 환헤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되며,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통해 환율변동이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당 펀드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없음

비교지수 미지정 사유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기초자산이 다양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분산투자되므로 특정한 비교지수를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지수를 추적하거나 초과성과를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아니합니다.

※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IBK자산운용의 홈페이지(www.ibkasset.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다양한 종류의 인컴·배당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국내·외 주식 및 국내·외 채권, 대체투자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가격변동 및 배당소득 등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은 외국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외화표시자산에 대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한다고 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함에 따라 환율변동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금융투자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연관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본 자료 작성 시점 현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채권 및 주식시장 등에 투자함에 따라 관련 증권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가치변동은 투자신탁 수익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채권, 주식, 다양한 대체투자자산 및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 등에 투자함으로써 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국내외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자율 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위험관리와 초과수익을 위해 국내외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 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높은 위험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투자 대상의 신용 상태가 변화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국내 투자의 경우 투자대상이 국가 및 정부가 발행한 국공채의 경우 신용위험은 매우 작습니다. 단, 일반 기업 등에서 발행한 채권의 경우 신용위험(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에 노출 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국가의 시장·정치·경제적 상황·정부정책·과세제도 등의 변화로 인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산별 편입비율을 장기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이 시장의 움직임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변동성 및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타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 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Exchange Traded Fund)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종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가 없는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의 특성 상 비교지수를 책정하지 않습니다. 비교지수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투자위험이 감소되거나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비교지수를 책정한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해외자산에 투자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불확실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외국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국가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지연	국제 결제와 관련된 송금 지연 및 해외증권시장의 증권거래소가 장기간 휴장될 경우 환매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외국 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통화관련 장내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하여 환헷지를 수행하나, 이러한 전략이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헷지에 대한 사항은 투자신탁 환위험관리 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제처리(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간의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처리에 대한 위험(오퍼레이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자문업자 계약해지 및 변경위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직접운용 또는 다른 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되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적용일이 다르고 환매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까지 기간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펀드 위험	집합투자기구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의 자산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지 위험 등	① 다음과 각 호의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지)**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 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특히, 상기 3, 4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중 처리방안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의무 해지)**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의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IBK 단기국공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운용성과에 따른 실제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고려하여 6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주식 및 국내·외 채권, 대체투자자산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전세계 경제여건 변화와 국내·외 자산의 가격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투자원본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15.42%**(직전 결산일 기준: 12.62%)

주1)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투자신탁으로 실제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을 고려하여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의 분류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에 따른 등급 기준표(97.5% Var 모형* 사용)>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 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 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투자위험등급 변경내역>

변경일	변경 위험등급	변경사유
2024.12.27	4등급 → 4등급	- 투자위험등급 산정기준 변경 -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준)) -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이 20%이하 10%초과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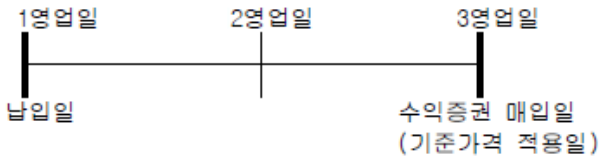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온라인 판매체계를 통해 가입한 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전문투자자(Cf)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 9 호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외국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100 억이상 투자하는 경우,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에서 가입 가능한 경우로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특정금전신탁계약,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률에 의한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자금 전용 수익증권(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경우는 제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
수수료미징구-디폴트옵션-퇴직연금(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설정・설립된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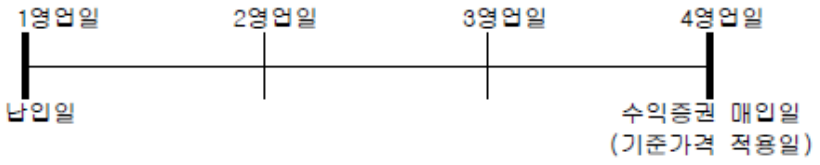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주)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선취판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각 목의 종류에 따라 부과합니다.

(가) 종류 A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
(나) 종류 Ae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

주)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여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7시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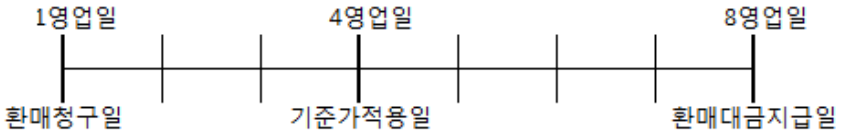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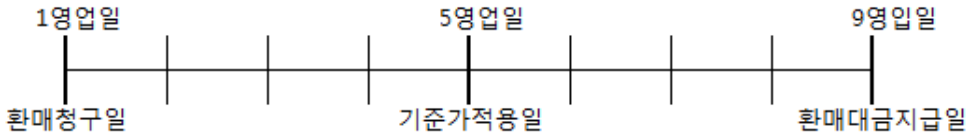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O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D+7)**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5영업일(D+4)**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각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후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환매금액을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다음의 종류 집합투자증권별 후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가) 종류 S 수익증권 : 3 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4)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습니다.

(5)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6)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8)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가)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② 증권시장이나 해외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③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② 투자신탁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부터 (다)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9)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bk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자형투자신탁에서는 자투자신탁에서 모아진 투자신탁재산을 모투자신탁에서 통합하여 운용합니다. 그러나 모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과는 달리 투자신탁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투자신탁과 자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투자대상 ETF의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Vanguard Short-Term TIPS ETF 예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뉴욕 증권거래소 영업일 기준 오후 4시의 종가를 가격으로 계산되며, 만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예상치 못하게 종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나스닥 종가로 계산합니다. (나스닥이 불가능한 경우 Vanguard사가 선정하는 타 대체 증권거래소 종가) 각 클래스는 해당 클래스 별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클래스별 총좌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을 계산합니다. 미국 휴일 또는 뉴욕증권 거래소가 휴장인 경우, 기준가격은 산출되지 않으며, 펀드는 매도 또는 상환할 수 없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Vanguard사 홈페이지 (https://investor.vanguard.com/hom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관련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 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법, 시행령,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등(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과 집합투자규약 등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일의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③장외파생상품	가)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하여 평가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의 평가에 대하여 특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달리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제출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상장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합니다)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평가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상장된 증권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⑧해외증권	외화로 표시된 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시장의 전날의 최종시가
⑨해외장내파생상품	그 해외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전날의 가격으로 평가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일의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⑩기타 상기에 명시된 자산 이외에는 관련법령 및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① 구성

평가업무 담당임원, 운용업무 담당임원, 리스크 관리 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집합투자재산 평가 담당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② 업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가)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나) 장외파생상품 및 실물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다) 부도채권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투자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집합투자재산 평가와 관련된 채권평가기관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바) 채권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사)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아)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자) 기타 관련법규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등에 의해 위임된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1.0%이내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5%이내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전문투자자(Cf)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없음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C-P)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C-R)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Re)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퇴직연금(S-R)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디폴트옵션 -퇴직연금(O)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과시기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판매수수료율은 상기 정해진 범위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여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은 판매회사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ass S의 후취판매수수료: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익증권저축약관에 따른 목적식 투자고객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종류별 가입자격은 "제2 부의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구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운용	판매	수탁	사무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포함)	증권 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0.3000	0.4000	0.0500	0.0200	0.7700	0.0000	0.7700	0.900	1.0934	0.49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0.3000	0.7000	0.0500	0.0200	1.0700	0.0019	1.0719	1.190	1.3845	0.4336
수수료선취-온라인 (Ae)	0.3000	0.2000	0.0500	0.0200	0.5700	0.0010	0.5710	0.580	0.8824	0.45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3000	0.3500	0.0500	0.0200	0.7200	0.0022	0.7222	0.730	1.0331	0.41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전문투자자(Cf)	0.3000	0.0200	0.0500	0.0200	0.3900	0.0022	0.3922	-	0.7156	0.49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0.3000	-	0.0500	0.0200	0.3700	0.0022	0.3722	-	0.6956	0.495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0.3000	0.2700	0.0500	0.0200	0.6400	0.0022	0.6422	-	0.9656	0.49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3000	0.2160	0.0500	0.0200	0.5860	0.0022	0.5882	-	0.9116	0.49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3000	0.5600	0.0500	0.0200	0.9300	0.0000	0.9300	-	1.2392	0.40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3000	0.2800	0.0500	0.0200	0.6500	0.0019	0.6519	-	0.9616	0.41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0.3000	0.4480	0.0500	0.0200	0.8180	0.0000	0.8180	-	1.1272	0.407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0.3000	0.2240	0.0500	0.0200	0.5940	0.0022	0.5962	-	0.9065	0.4204
수수료미징구-오라인슈퍼-퇴직연금(S-R)	0.3000	0.2060	0.0500	0.0200	0.5760	0.0022	0.5782	-	0.9016	0.49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3000	0.3280	0.0500	0.0200	0.6980	0.0022	0.7002	-	1.0236	0.4956
수수료미징구-디폴트옵션-퇴직연금(O)	0.3000	0.1792	0.0500	0.0200	0.5492	0.0022	0.5514	-	0.8748	0.4956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등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파생상품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15,357

※운용: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 판매회사보수, 수탁: 신탁업자보수, 사무: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를 의미합니다.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기타비용 비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7.01 ~ 2026.06.30]
※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 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투자신탁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7.01 ~ 2026.06.30]
※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여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연 0.19%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종류 A, 종류 Ae, 종류 C, 종류 Ce의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종류	투자기간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80	263	350	535	1,070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214	332	454	714	1,45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3	229	351	608	1,343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145	296	452	780	1,709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0	172	237	376	780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142	238	338	550	1,16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6	155	237	413	921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108	221	338	587	1,2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전문투자자(Cf)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41	84	129	226	508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75	153	235	409	91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39	80	123	214	483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73	149	229	398	88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7	138	211	368	82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101	207	316	549	1,2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2	126	194	337	755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96	195	299	519	1,15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8	199	305	529	1,174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130	265	405	701	1,54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8	140	214	373	834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101	206	315	547	1,2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6	175	268	467	1,038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118	241	369	639	1,4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3	128	196	342	765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95	194	297	516	1,1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61	124	190	331	742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95	193	296	513	1,1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4	150	230	400	894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107	219	335	581	1,286
수수료미징구-디폴트옵션-퇴직연금(O)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8	118	181	316	709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시	92	187	287	498	1,107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취판매수수료가 있는 Class A, Ae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의 상한을 부과한다고 가정하고 산출하였습니다.

※Class S 수익증권의 경우 10년 동안 투자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고려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Class C와 Class A를 기준으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3년], Class Ce와 Class Ae를 기준으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3년] 이 되는 시점이나, Class 유형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서의 작성시점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투자신탁 종류(Class)의 투자기간별 수수료·비용 예시의 경우 유사 유형의

투자신탁의 추정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 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상기 도표는 최초설정일에 적용되는 보수를 기준으로 10년 동안 투자할 경우의 투자기간별 예시입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상 투자대상 모투자신탁 및 투자비중이 이 투자신탁과 동일한 자투자신탁 보수율 현황

- 모투자신탁 명칭: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연간, %)

1.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종류구분	판매수수료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총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00% 이내	0.3000	0.4000	0.0500	0.0200	0.77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3000	0.7000	0.0500	0.0200	1.07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0.50% 이내	0.3000	0.2000	0.0500	0.0200	0.57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3000	0.3500	0.0500	0.0200	0.72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전문투자자(C-f)		0.3000	0.0200	0.0500	0.0200	0.39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3000	-	0.0500	0.0200	0.370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15% 이내	0.3000	0.2700	0.0500	0.0200	0.64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3000	0.2160	0.0500	0.0200	0.58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0.3000	0.5600	0.0500	0.0200	0.93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0.3000	0.2800	0.0500	0.0200	0.65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0.3000	0.4480	0.0500	0.0200	0.818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0.3000	0.2240	0.0500	0.0200	0.59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R)		0.3000	0.2060	0.0500	0.0200	0.57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3000	0.3280	0.0500	0.0200	0.6980
수수료미징구-디폴트옵션-퇴직연금(O)		0.3000	0.1792	0.0500	0.0200	0.5492
2. IBK 인컴바닐라 EMP 분기지급형 증권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종류구분	판매수수료	운용	판매	신탁	사무	총보수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1.00% 이내	0.3000	0.4000	0.0500	0.0200	0.77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0.3000	0.7000	0.0500	0.0200	1.07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0.50% 이내	0.3000	0.2000	0.0500	0.0200	0.57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3000	0.3500	0.0500	0.0200	0.72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전문투자자(C-f)		0.3000	0.0200	0.0500	0.0200	0.39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3000	-	0.0500	0.0200	0.370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15% 이내	0.3000	0.2700	0.0500	0.0200	0.64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0.3000	0.3280	0.0500	0.0200	0.6980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제 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최초설정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펀드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총 손익은 과세대상자산의 손익과 비과세대상자산의 손익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투자자의 총 손익이 투자원금대비 (-)인 경우로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해당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연금계좌 세액공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지방소득세 포함) 2.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종합과세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 단,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 아래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 적용 1.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2.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연금소득 분리과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 퇴직 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 의료 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 ※ 2024년 1월1일 이후 연금 수령 분부터 적용한다.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특별중도해지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중도해지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공제
단, 퇴직연금계좌 새엑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②과세 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함
③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 부. [별첨]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등록신청서 제출일: 2021.06.07)

1.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배당 및 이자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종류의 인컴·배당관련 자산의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채권 및 대체투자자산관련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투자함으로서, 배당수익 및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에 분산투자하는 효과가 있어 투자신탁재산의 위험관리에 효율적입니다.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구분	선정 기준
채권관련펀드	선진국 및 이머징국가 국채, 회사채(투기등급 회사채(하이일드채권) 포함)) 및 한국국채 관련 집합투자기구(ETF 포함) 등
대체투자자산관련 펀드 (부동산, 인프라 등)	자산퀄리티(입지, 딜 내역, 부채 등)를 분석하고 최근 성과, 배당 및 밸류에이션 등을 검토하여 선별

*** 피투자 펀드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실시 여부 및 실사 방법**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는 주로 상장되어 거래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업자는 별도의 실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피투자펀드의 시가총액 규모, 거래량, 거래스프레드, 자산군 대표상품 여부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투자대상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1. 집합투자증권	40%초과	법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법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법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 및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지닌 것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ETF 포함),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ETF포함), 대체투자(인프라, 부동산 등)관련 집합투자기구(ETF포함)를 합산하여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2. 주식	50%미만	법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3. 채권	50%미만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4. 자산유동화증권	40%미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5. 어음	40%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6. 장내외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외파생상품(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에서 거래되거나 발행된 것을 포함 한다)
7.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8.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9.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10.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1.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법시행령 제268조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1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치 등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법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13.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1~5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의 1~5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상기 3.채권, 5.어음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투자대상 파생상품

투자대상	기초자산	투자의 목적
장내 파생상품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	헤지 또는 헤지 외 목적
장외 파생상품		

주1)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가 되도록 투자합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항목	투자제한의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

	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제80조 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동일종목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단,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1) 지방채증권 (2)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3)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4)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7)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4. 동일법인 발행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거래	가.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6.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투자한도 초과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항목2 내지 항목4, 항목5의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②항목2의 가목 및 나목, 항목3, 항목5의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항목2의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항목2의 다목을 적용할 때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의4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할 수 있다.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다양한 종류의 인컴·배당관련 국내·외 주식 및 국내·외 채권, 대체투자자산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다만,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기구(ETF 포함),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ETF 포함), 대체투자(인프라, 부동산 등)관련 집합투자기구(ETF 포함)를 합산하여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투자합니다.

① 채권관련 인컴수익 추구전략

- 국내·외 국채, 투자적격등급(IG) 채권 및 투기등급(하이일드)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ETF 포함)에 투자
- 신용시장 변화에 따른 하이일드 채권 투자비중을 조절하여 수익률 개선 및 신용위험 관리

② **대체자산관련 인컴수익 추구전략**

- 국내·외 부동산(REITs), 인프라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
- 부동산, 인프라 중심의 투자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수익과 장기 자본차익을 추구
-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관련 투자는 입지, 현금흐름, 순영업이익(NOI),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 정부보조지원책 등의 분석을 기반
 (국내오피스, 고속도로, 일본리츠, 일본태양광, 미국인프라 등으로 분산하며 신규 투자처 지속 발굴)
- 해외 리츠관련 선물을 활용하여 해외 리츠의 가격하락 위험을 적극적으로 방어(Hedge)하면서, 인컴수익의 선별적 확보 추구

③ **배당수익 추구전략**

- 국내·외 배당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주, 배당성향 및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에 투자
- 지속적인 배당수익뿐만 아니라 주가상승을 동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선별

※ 금융시장상황 및 운용전문인력의 투자판단 등에 따라, 배당수익 추구전략의 수행을 위하여 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예시)>

자산유형	종목명	유형	등록지	운용사	주요내용	투자비중(안)
채권인컴	Vanguard Short-Term TIPS ETF	ETF	미국	The Vanguard Group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국채 -설정일: 2012-10-16 -설정액: 약 136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3.0% 수준
	SPDR Bloomberg Barclays Short-Term HY ETF	ETF	미국	State Street Bank and Trust Company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하이일드채 -설정일: 2012-03-15 -설정액: 약 45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17.0% 수준
	iShares 0-5 Year TIPS ETF	ETF	미국	BlackRock Fund Advisors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국채 -설정일: 2012-03-10 -설정액: 약 52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17.0% 수준
	PIMCO 1-5 Year U.S. TIPS ETF	ETF	미국	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 LLC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국채 -설정일: 2009-08-21 -설정액: 약 9.0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10.0% 수준
대체인컴	맥쿼리인프라	인프라	대한민국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주요 투자대상자산: 국내 사회기반시설사업 -설정일: 2006-03-15 -설정액: 약 4 조 4,594 억원 -표시통화: KRW -감독기관: 한국 금융감독원	8.0% 수준
	Prologis	리츠	미국	Prologis,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글로벌 산업용 부동산	2.0%

					-설정일: 1997-11-20 -설정액: 약 853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준
	Omega Healthcare	리츠	미국	Omega Healthcare Investors,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의료 시설 -설정일: 1992-03-31 -설정액: 약 84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 수준
	American Homes 4 Rent	리츠	미국	AMERICAN HOMES 4 RENT, L.P.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주거용 부동산 -설정일: 2013-08-01 -설정액: 약 119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2.0% 수준
	American Tower	리츠	미국	American Tower Corp	-주요 투자대상자산:미국 인프라스트럭처관련 부동산 -설정일: 2010-06-28 -설정액: 약 1,117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1.6% 수준
	Equinix	리츠	미국	Equinix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글로벌 데이터센터관련 부동산 -설정일: 2000-08-11 -설정액: 약 643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0.8% 수준
	Simon Property	리츠	미국	Simon Property Group,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소매 부동산 -설정일: 1993-12-13 -설정액: 약 379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0.8% 수준
	Alexandria	리츠	미국	Alexandria Real Estate Equities Inc.	-주요 투자대상자산: 미국 사무실용 부동산 -설정일: 1997-05-27 -설정액: 약 264 억 USD -표시통화: USD -감독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0.8% 수준
배당 인컴	배당주 등	주식	미국	-	-	5.0% 수준
유동성	-	-	-	-	-	10.0% 수준

※ 상기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1년 5월 19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 가능한 자산의 일부를 제시한 예시이며, 향후 시장상황, 운용규모 및 운용상황 등에 따라 대상자산 및 투자비중이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업자에 관한 사항>

※ 투자대상 유니버스는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과 협업하여 선정

- 효율적인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선정을 위해 온라인특화 투자자문사인 ㈜플레인바닐라 투자자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유니버스 선정에 대한 자문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업자인 IBK 자산운용이 투자대상 종목 및 투자비율 등을 최종 결정하여 운용합니다.

i) 업무위탁의 범위와 사유

구분	내용
업무위탁의 범위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업무위탁의 사유	업무의 전문성 강화

ii) 투자자문업자의 회사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주식회사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
설립일	2016. 5. 16 법인 설립 / 2017. 9. 8 투자자문업 등록
주소 및 연락처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65, 4층

※ 상기 운용전략은 금융시장 상황 및 운용전문인력의 투자판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문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운용 중에 투자자문업자 와의 자문 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2) 위험관리

- 해외 리츠 선물을 활용하여 리츠의 가격 변동성 위험 방어전략을 수행합니다.
- 시장 변동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에 따른 위험자산의 투자비중을 결정합니다.
- 보유 집합투자기구(ETF 등),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ETF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선제적 위험관리를 수행합니다.
-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경우 정기 운용보고서 입수 및 수시공시 사항 등을 점검하여 위험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 운용목적, 기본정보, 운용성과, 투자현황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하는 월간운용보고서 등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환헤지 전략 및 환위험관리>

1) 환헤지 여부 및 목표 헤지 비율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외화표시자산(USD 등)에 투자하며 환율변동위험의 회피를 위하여 환헤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목표 환헷지 비율: 외화표시 자산 NAV의 80%이상 수준)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에 따라 환헷지 대상 자산 및 환헷지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해당 외화표시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완전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 설정·해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 등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3) 환헷지의 비용 등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 비용

목표 헤지비율	기준일(2026.06.30) 현재 환헤지 비율(%)	(2025.07.01~2026.06.30) 환헤지 비용(원)
외화표시자산(USD 등)을 기준으로 80% 이상 수준	88.032082	474,000

※환헤지 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환헤지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과 해지전략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의 환해지 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규로 설정되는 투자신탁으로서 실제 환헤지 비율과 비용은 투자신탁 회계기간 경과 후 기재할 예정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7.01 ~ 2026.06.30]

4) 환헤지가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가치 상승)할 경우 외화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차익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되며, 환율이 상승(원화대비 해당 외화가치 상승)하는 경우 외화자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익이 발생하지만, 동시에 환헤지 계약에서 환손실이 발생하여 손익이 상쇄됩니다. 따라서, 환헤지를 통해 환율변동이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가치의 변동, 환헤지 시행시기의 시차, 헤지비용 등의 이유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가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하여 해당 펀드수익률이 환율변동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자산가치 변동과 환율변동이 해당 펀드의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 없음

비교지수 미지정 사유

이 투자신탁은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기초자산이 다양한 국내·외 주식 및 국내·외 집합투자증권(ETF포함)에 분산투자되므로 특정한 비교지수를 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지수를 추적하거나 초과성과를 목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므로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아니합니다.

※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시에는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변경 절차(수시공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다양한 종류의 인컴·배당관련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국내·외 주식 및 국내·외 채권, 대체투자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 분산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의 가격변동 및 배당소득 등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은 외국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화대비 해당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외화표시자산에 대한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나 환헤지 전략을 수행한다고 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함에 따라 환율변동에 의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로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자집합투자기구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5 기(2025.07.01 - 2026.06.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4 기(2024.07.01 - 2025.06.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3기(2023.07.01 - 2024.06.30)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재무상태표			
항 목	제 5기 (2026.06.30)	제 4기 (2025.06.30)	제 3기 (2024.06.30)
운용자산	3,320,664,785	3,988,271,917	7,198,929,649
증권	3,255,096,460	3,897,728,037	7,059,752,06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65,568,325	90,543,880	139,177,584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306,158,915	166,932,098	98,933,796
자산총계	3,626,823,700	4,155,204,015	7,297,863,445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39,264,480	99,286,287	110,784,141
부채총계	139,264,480	99,286,287	110,784,141
원본	2,834,750,746	4,063,076,262	7,255,422,441
수익조정금	-119,718,300	-96,386,356	41,760,357
이익잉여금	772,526,774	89,227,822	-110,103,494
자본총계	3,487,559,220	4,055,917,728	7,187,079,304
손익계산서			
항 목	제 5기 (2025.07.01 - 2026.06.30)	제 4기 (2024.07.01 - 2025.06.30)	제 3기 (2023.07.01 - 2024.06.30)
운용수익	775,329,607	102,719,599	509,750,544
이자수익	1,420,333	2,677,027	1,987,333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수익(손)	773,909,274	100,042,572	507,763,211
기타 수익	0	0	0
운용비용	25,300,597	36,752,790	50,411,628
관련회사 보수	25,300,597	36,752,790	50,411,628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797,186	1,172,356	1,579,568
당기순이익	749,231,824	64,794,453	457,759,348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IBK인컴 바닐라 EMP증권 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5.07.01 - 2026.06.30)			전기(2024.07.01 - 2025.06.30)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합계	0	0	0	0	0	0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IBK인컴 바닐라 EMP증권 자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단위: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0	0	0	0	-

*** 모집합투자기구의 거래비용 및 회전율 –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 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IBK인컴바닐라EMP증권 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5.07.01 - 2026.06.30)			전기(2024.07.01 - 2025.06.30)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270	0	0.0301	5,005	2	0.0464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33,290	16	0.0484	82,206	41	0.0498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11,020	0	0.0043	44,362	2	0.0043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합계	44,580	17	0.0374	131,573	45	0.0344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 2)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IBK인컴바닐라EMP증권 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단위: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39,586	270	111	243.05	

(주 1)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운용펀드)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5기(2026.06.30)		제4기(2025.06.30)		제3기(2024.06.30)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65,568,325		90,543,880		139,177,584
1. 현금및현금성자산	65,568,325		90,543,880		139,177,584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3,255,096,460		3,897,728,037		7,059,752,065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3,255,096,460		3,897,728,037		7,059,752,065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306,158,915		166,932,098		98,933,796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10,727		152,461		338,443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306,048,188		166,779,637		98,595,353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3,626,823,700		4,155,204,015		7,297,863,445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39,264,480		99,286,287		110,784,141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133,284,521		92,279,804		98,037,427	
4. 수수료미지급금	5,979,959		7,006,483		12,746,714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139,264,480		99,286,287		110,784,141
자 본						
1. 원 본	2,834,750,746		4,063,076,262		7,255,422,441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652,808,474		-7,158,534		-68,343,137	
(발행좌수 당기: 2,834,750,746 좌	이익잉여금	772,526,774		89,227,822		-110,103,494
전기: 4,063,076,262 좌	수익조정금	-119,718,300		-96,386,356		41,760,357
전전기: 7,255,422,441 좌)						
(기준가격 당기: 1,198.49 원						
전기: 1,021.37 원						
전전기: 1,013.63 원)						
자 본 총 계		3,487,559,220		4,055,917,728		7,187,079,304
부 채 와 자 본 총 계		3,626,823,700		4,155,204,015		7,297,863,445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5기(2025.07.01-2026.06.30) 금 액		제4기(2024.07.01-2025.06.30) 금 액		제3기(2023.07.01-2024.06.30)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420,333		2,677,027		1,987,333
1. 이 자 수 익	1,420,333		2,677,027		1,987,333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773,909,274		304,520,530		546,092,298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453,749,344				506,836,740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320,159,930		304,520,530		39,255,558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04,477,958		38,329,087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184,595,539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19,882,419		38,329,087	
운 용 비 용		26,097,783		37,925,146		51,991,196
1. 운용수수료	10,894,333		15,801,424		21,092,387	
2. 판매수수료	12,591,485		18,318,698		25,804,571	
3. 수탁수수료	1,814,779		2,632,668		3,514,670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797,186		1,172,356		1,579,568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749,231,824		64,794,453		457,759,348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264302541		0.015947142		0.063092032

2 연도별 설정 및 판매 현황

(단위: 억좌, 억원)

[투자신탁 전체]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7.01 - 2026.06.30	40	40	3	3	15	17	28	35
2024.07.01 - 2025.06.30	71	72	12	13	44	45	40	41
2023.07.01 - 2024.06.30	70	66	34	33	33	32	71	72

(주1) 2025.07.01 - 2026.06.3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86,984,645좌/104,249,940원

(주2) 2024.07.01 - 2025.06.3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914좌/1,955원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7.01 - 2026.06.30	1	1	0	0	1	1	0	0
2024.07.01 - 2025.06.30	21	21	1	1	21	21	1	1
2023.07.01 - 2024.06.30	21	20	0	0	0	0	21	21

(주1) 2025.07.01 - 2026.06.3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97좌/732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7.01 - 2026.06.30	5	5	0	0	2	2	3	4
2024.07.01 - 2025.06.30	8	7	0	0	3	3	5	5
2023.07.01 - 2024.06.30	8	8	0	0	1	1	8	7

(주1) 2025.07.01 - 2026.06.3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895,838좌/7,009,870원

[수수료선취-온라인(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7.01 - 2026.06.30	2	2	0	0	1	1	1	1
2024.07.01 - 2025.06.30	3	3	1	1	2	2	2	2
2023.07.01 - 2024.06.30	5	5	1	1	3	3	3	3

(주1) 2025.07.01 - 2026.06.3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792,875좌/3,342,011원

(주2) 2024.07.01 - 2025.06.3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1,946좌/1,955원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7.01 - 2026.06.30	15	15	1	1	4	4	12	15
2024.07.01 - 2025.06.30	17	16	2	2	4	4	15	15
2023.07.01 - 2024.06.30	28	26	5	5	16	16	17	16

(주1) 2025.07.01 - 2026.06.3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6,871,773좌/44,056,094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3.07.01 - 2024.06.30	0	0	0	0	0	0	0	0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7.01 - 2026.06.30	1	1	0	0	0	0	1	1
2024.07.01 - 2025.06.30	1	1	0	0	0	0	1	1
2023.07.01 - 2024.06.30	1	1	0	0	0	0	1	1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7.01 - 2026.06.30	2	2	1	1	1	1	2	2
2024.07.01 - 2025.06.30	2	2	1	1	1	1	2	2
2023.07.01 - 2024.06.30	2	2	2	2	1	1	2	2

주)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7.01 - 2026.06.30	0	0	0	0	0	0	0	1
2024.07.01 - 2025.06.30	0	0	0	0	0	0	0	0
2023.07.01 - 2024.06.30	0	0	0	0	0	0	0	0

(주 1) 2025.07.01 - 2026.06.3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004,048 좌/2,402,900 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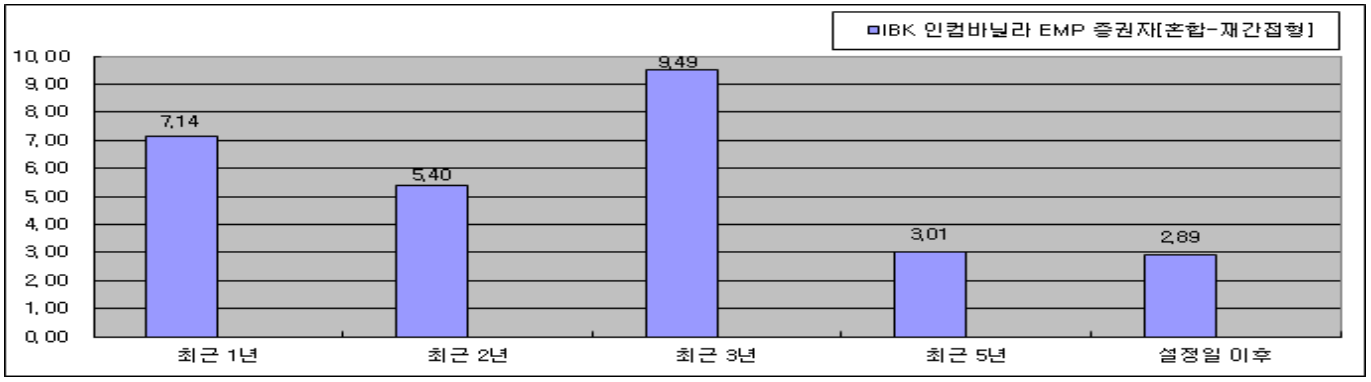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7.01 - 2026.06.30	15	15	1	1	6	7	9	11
2024.07.01 - 2025.06.30	21	21	7	7	14	13	15	15
2023.07.01 - 2024.06.30	6	5	26	25	11	10	21	21

(주 1) 2025.07.01 - 2026.06.30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31,221,848 좌/37,250,389 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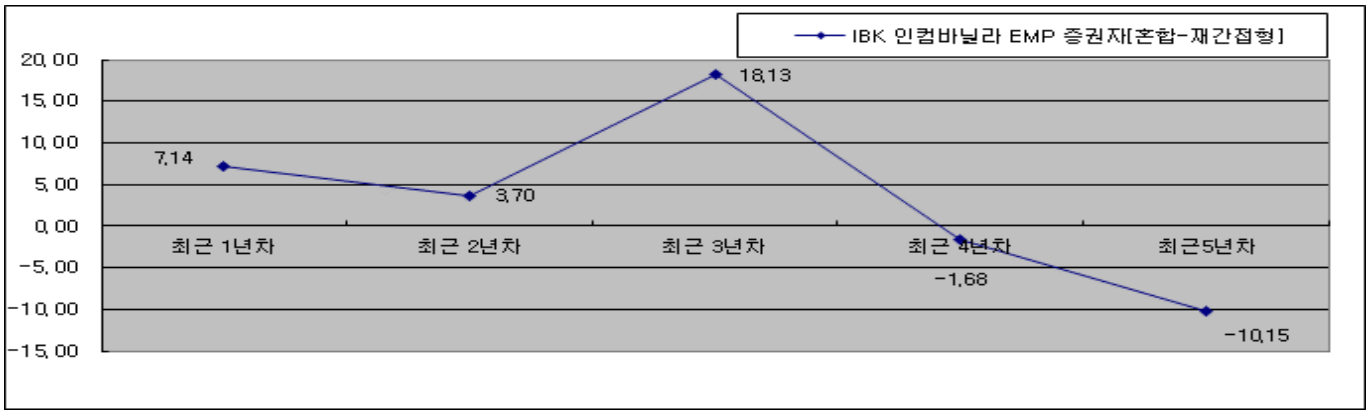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0.21 ~ 26.10.20	24.10.21 ~ 26.10.20	23.10.21 ~ 26.10.20	21.10.21 ~ 26.10.20	21.07.01 ~ 26.10.20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자[혼합-재간접형]	7.14	5.40	9.49	3.01	2.89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0.33	8.50	8.04	7.43	7.2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6.34	4.61	8.67	2.22	2.11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0.33	8.50	8.04	7.43	7.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6.00	4.29	8.34	1.91	1.80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0.33	8.50	8.04	7.43	7.24
수수료선취-온라인(Ae)	6.53	4.81	8.88	2.42	2.31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0.33	8.50	8.04	7.43	7.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6.37	4.65	8.71	2.27	2.15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0.33	8.50	8.04	7.43	7.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6.15	4.43	8.49	2.06	1.98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0.33	8.50	8.04	7.43	7.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6.45	4.72	8.79	2.34	2.23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10.33	8.50	8.04	7.43	7.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6.27	4.55	4.57		2.92
비교지수	-	-	-		-
수익률변동성(%)	10.33	8.50	8.04		7.6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6.51	4.78	8.85		2.34
비교지수	-	-	-		-
수익률변동성(%)	10.33	8.50	8.04		7.44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5.10.21 ~ 26.10.20	24.10.21 ~ 25.10.20	23.10.21 ~ 24.10.20	22.10.21 ~ 23.10.20	21.10.21 ~ 22.10.20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자[혼합-재간접형]	7.14	3.70	18.13	-1.68	-10.15
비교지수	-	-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6.34	2.90	17.24	-2.45	-10.85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6.00	2.59	16.90	-2.74	-11.12
비교지수	-	-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6.53	3.11	17.47	-2.25	-10.67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6.37	2.95	17.30	-2.40	-10.80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6.15	2.74	17.06	-2.60	-10.99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6.45	3.03	17.38	-2.33	-10.74
비교지수	-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R)	6.27	2.86	4.60		
비교지수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Re)	6.51	3.08	17.44	-2.27	-11.11
비교지수	-	-	-	-	-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없음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2026.10.20 기준, 단위: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29	0	0	0	0	0	1	0	30
	(0.00)	(0.00)	(0.00)	(97.55)	(0.00)	(0.00)	(0.00)	(0.00)	(0.00)	(1.95)	(0.51)	(100.00)
합계	0	0	0	29	0	0	0	0	0	1	0	30
	(0.00)	(0.00)	(0.00)	(97.55)	(0.00)	(0.00)	(0.00)	(0.00)	(0.00)	(1.95)	(0.51)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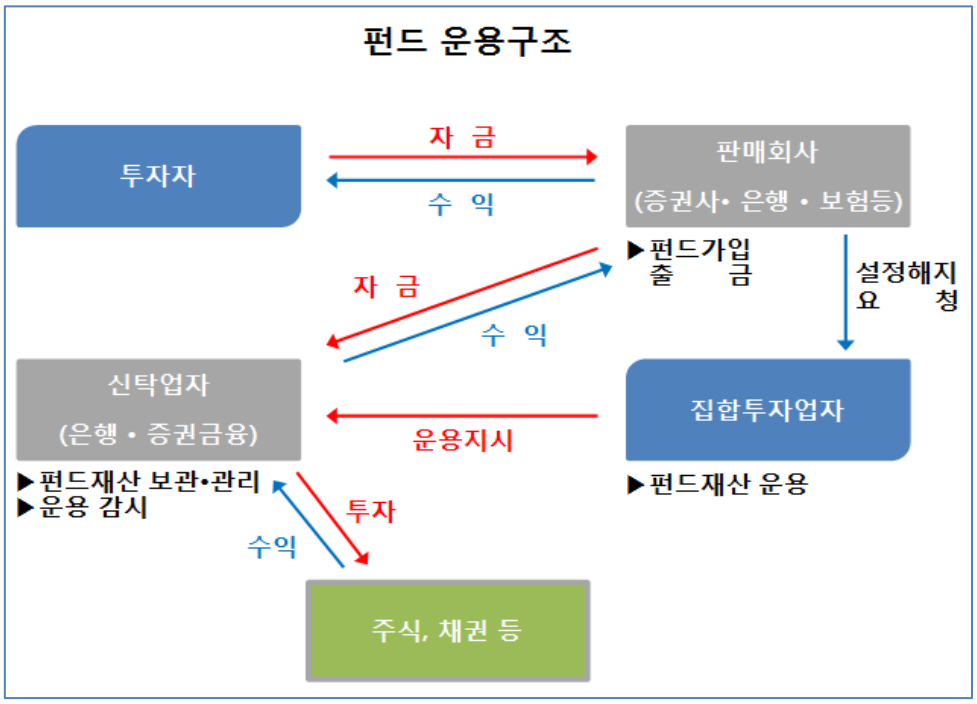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IBK 인컴바닐라 EMP 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6.10.20 기준, 단위: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KRW	0	0	0	3	0	0	0	0	0	2	0	5
	(5.07)	(0.00)	(0.00)	(53.61)	(0.00)	(0.00)	(0.00)	(0.00)	(0.00)	(41.23)	(0.09)	(15.00)
HKD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USD	0	0	0	25	0	0	0	0	0	2	0	27
	(0.00)	(0.00)	(0.00)	(93.08)	(0.00)	(0.89)	(0.00)	(0.00)	(0.00)	(6.03)	(0.00)	(85.00)
합계	0	0	0	27	0	0	0	0	0	4	0	31
	(0.77)	(0.00)	(0.00)	(87.07)	(0.00)	(0.76)	(0.00)	(0.00)	(0.00)	(11.39)	(0.01)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IBK 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신관 11 층) (대표전화: 02-727-8800, www.ibkasset.com)
회사 연혁	2004. 10. 26 기은 SG 자산운용 설립 (중소기업은행 50%, Societe Generale AM 50% 출자) 2004. 12. 24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업 본허가 취득 2009. 02. 17 IBK 그랑프리국공채 채권형 펀드 - 국내 채권형 베스트 펀드 수상 <2008 매일경제신문·제로인 한국 펀드 대상> 2010. 01. 28 Societe Generale AM 과 합작 종결(중소기업은행 100% 출자로 전환) <"IBK 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13. 11. 28 헤럴드펀드대상 최우수 국내 중소형펀드 수상 <IBK 중소형주코리아 주식 펀드> 2014. 03. 18 매일경제신문 금융상품대상 은상 수상 <IBK 신성장특허보유기업 주식펀드> 2019. 12. 11 머니투데이 2019 대한민국 펀드대상 혁신펀드 수상 < IBK 플레인바닐라 EMP 펀드>
자본금	200 억
주요주주현황	IBK 기업은행 (100%)
이해관계인	-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IBK기업은행(대주주), IBK투자증권(계열회사) - 신탁업자: 신한은행, 산업은행

나. 주요업무

(1)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의무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충실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억원)

[요약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2025.12.31	2024.12.31
현금및예치금	284	539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654	29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	2
유형자산	4	4
무형자산	33	22
기타자산	81	84
자산총계	**1,056**	**949**
기타부채	61	51
부채총계	**61**	**51**
자본금	200	200
이익잉여금	794	703
자본총계	**995**	**898**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5.1.1 ~'25.12.31	'24.1.1 ~'24.12.31
영업수익	308	265
영업비용	173	158
영업이익(손실)	135	107
영업외수익	0.08	8
영업외비용	0.9	0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135	114
당기순이익	**106**	**90**

라. 운용자산 규모

[2026.10.20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특별자산및	혼합자산및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부동산파생	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파생		
수탁고	4,580	33,427	3,993	0	128,609	371	0	230	10,136	0	160,106	341,453

주)한국금융투자협회 기준. 일임자산 제외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업무의 위탁]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를 아래의 투자자문업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문업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이 경우 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문업자가 협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 업무위탁계약기간의 종료, 업무위탁계약의 해지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투자자문업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공시합니다.

(1) 업무위탁의 범위와 사유

구분	내용
업무위탁의 범위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업무위탁의 사유	업무의 전문성 강화

(2) 투자자문업자의 회사 개요

구분	내용
회사명	주식회사 플레인바닐라투자자문
설립일	2016. 5. 16 법인 설립 / 2017. 9. 8 투자자문업 등록
주소 및 연락처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165, 4층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 02)1588-1770
회사연혁등 (홈페이지 참조)	www.kr.hsbc.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③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④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⑤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⑥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⑦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18,19,20층 ☏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홈 페 이 지 참 조)	2000. 06 설립 (www.aita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업무
- 상기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2) 의무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 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3)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8 상환빌딩 4층 ☏ 02-399-3350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대하빌딩 4층 ☏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 02-3215-1400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2층 ☏ 02-721-53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3층 ☏ 02-721-5300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2001.05 설립 (www.koreaap.com)	2000.06. 설립 (www.nicepni.com)	2000.06. 설립 (www.bond.co.kr)	2011.06. 설립 (www.fnpricing.com)	2020.06. 설립 (https://www.egap.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2)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3)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 사유 중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을 의미)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 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그 수익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법시행규칙 제 20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출받아 보내야 합니다.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수익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

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아래와 같이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②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③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⑤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아래와 같이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②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⑤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⑥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수익자는 신탁계약서 제37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투자신탁 보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합니다.

1. 대상금액: 신탁계약서 제37조에 따른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에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법률자문료 등)
2. 대상기간: 변경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상기 투자신탁보수의 적용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신탁계약서 제35조 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할 것으로 보아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시행령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 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 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법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 투자 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법 제193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분의 1 이하를 소유한 수익자에게는 합병 하는 날의 20일 전에 다음에서 정한 사항을 법 제89조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내용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으로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 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배해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한다),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합니다) 법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의 3) 내지 4) 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 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 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15 억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이 최초설정 후 1 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의해지 되거나,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신탁계약서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나)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다)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라)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회계기간의 말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 해지일 또는 해산일
 나)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다)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운용기간을 말한다)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마) 그 밖에 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1)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자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나) 신탁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다)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2)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나)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다)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내용

라) 법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마) 법시행령 제27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는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3) 법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1 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①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②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③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④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87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 의결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지 않습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증권거래 및 장내파생상품거래]

- 중개회사 선정 목적 및 필요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은 바탕으로 중개회사의 역량 및 서비스 질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여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으로써 운용의 투명성 및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평가 항목

 중개거래시장점유율, 거래관련자격보유, 조직 및 인력현황, 리서치 서비스의 질, 감독기관 제재 및 시정조치 내역, 결제안정성, 시장정보 제공능력, 매매체결의 신속성, 거래관련 보안유지 능력, 세미나 개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산정합니다.

-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 회 이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1)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2)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 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3)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1) 회사 경영관련 비용

 2)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3) 마케팅 비용

 4)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

 ※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IBK 자산운용㈜
투자목적	고유재산의 운용효율성 제고, 운용실적의 축적 및 집합투자업자의 책임운용을 위함
투자시기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

투자금액	금 2 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최소 3 년
투자금 회수계획	투자기간 이후 시장상황 등에 따라 회수할 계획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금액은 상기의 의무투자금액 외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의무투자기간 이전에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당연 해지사유 발생

② 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③ 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④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 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 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⑤ 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의무를 승계

※ 의무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 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회수할 예정이며, 1 회당 회수금액은 의무투자금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의무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의무투자기간 종료 1 개월 이전에 의무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내역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열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판매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절차를 말합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투자자가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상품의 경우 일정기간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환매조건부 매수/매도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